

50인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

- ▲ 8.31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제도 확대 집중 홍보
- ▲ 올해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공단(장관 안종주)는 8.18.(금)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라디오,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현장 캠페인 사진(별첨)
2. 중대재해 사이렌을 활용한 안내문구
 3.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권구형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나상명 (044-202-8893)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책임자	부 장	유재흥 (052-703-0646)
		담당자	차 장	장공화 (052-703-0647)





달라지는 제도 안내 휴게시설 설치의무 확대

배포일시 : 2023년 8월 17일

☞ 올해 8.18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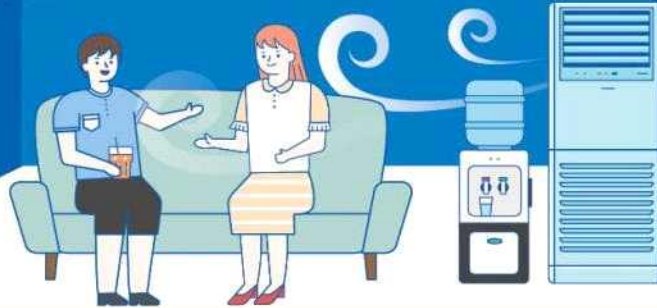
* 7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휴게시설 A to Z 해설가이드」를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게시)



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적용 확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2022. 8. 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3. 8. 18. 시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 | | | |
|---|--|--|---|
| 
1 전화 상담원 | 
2 돌봄 서비스 종사원 | 
3 텔레마케터 | 
4 배달원 |
|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6 아파트 경비원 | 
7 건물경비원 | |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의 「휴게시설 설치 A to Z 해설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해설가이드 다운로드 가능)

해설가이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게시(2022. 9. 5.)



2023-산업보건실-26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①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③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3 온도
 - 적절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4 습도
 - 적절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 5 조명
 - 적절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날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주요 질의답변

Q1. 소규모 사업장이라 휴게시설 설치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 가능한가요?

- ▶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장이 되나요?

-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이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